



[ 2019. 1. 1.] [ 2018 - 243 , 2018. 12. 28., ]

( ) 044 - 201 - 6828

1. ? ( “ ” )? 38  
( “ ” ) 29 6

2. 3 4

3. 가. 가

- 1) 가 .
- 2) 1) .

<p>법 제38조제1항제5호 (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)</p>	<p>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·수입량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</p>
<p>법 제38조제1항제6호 (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)</p>	<p>취소의 경우 :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 유사성 인정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·수입량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</p>
	<p>중지명령의 경우 :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조 또는 수입 중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·수입량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</p>

비고

1. 법 제38조제1항제2호, 제4호, 제6호 등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명령·취소·중지명령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, 해당 명령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별도로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원인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.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·확인 등을 받았다는 사유로 그 승인·확인 등이 취소된 경우,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그러한 승인·확인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.

위반행위의 유형	판매량 산정 기준
법 제38조제1항제1호 (법 제10조제1항·제5항을 위반한 경우)	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·수입량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
법 제38조제1항제1호 (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)	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·수입량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
법 제38조제1항제2호 (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)	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제조 또는 수입 금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·수입량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
법 제38조제1항제3호 (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)	해당 살생물물질을 물질승인 없이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·수입량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
법 제38조제1항제3호 (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)	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·수입량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
법 제38조제1항제4호 (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)	취소의 경우 :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·수입량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
	중지명령의 경우 :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한 제조 또는 수입 중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·수입량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
법 제38조제1항제5호 (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)	해당 살생물제품을 제품승인 없이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·수입량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

3) 1) 가 2) 가 , 가  
가 .

( 38 1 1 , 3 5 )”, “ ( 38 1 2 , 4 6 )” ,

위반행위의 유형	부과기준금액
매우 중대한 위반행위	6억 원 초과 8억 원 이하
중대한 위반행위	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

4.

가. 가 3 가 100 50

- 1)
- 2) 가
- 3)
- 4)
- 5) ,
- .
- ,
- 가 .

1) 가

위반기간	가중범위
2년 이상	25%
1년 이상 2년 미만	20%
9월 이상 1년 미만	15%
6월 이상 9월 미만	10%
3월 이상 6월 미만	5%

2) 가

3) 100 50

가)  
) 가

최근 3년간 위반횟수	가중범위
3회 이상	25%
2회 이상	10%

비고

1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,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)

)

)